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5조 ~ 제7조)

- 현행 별지서식의 의회를 나타내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별지 제1호 ~ 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인 회장의 한글 표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별지 서식의 회장 모형을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을 정비하여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안 제8조제1항의 ‘내지’라는 표현은 일반인이 ‘또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정비기준에 따라 “내지”를 “~부터 ~까지”로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3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5조 ~ 제7조)
- 나. 현행 별지서식의 의회를 나타내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
(별지 제1호 ~ 제4호)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장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0.11.13. ~ 11.17.):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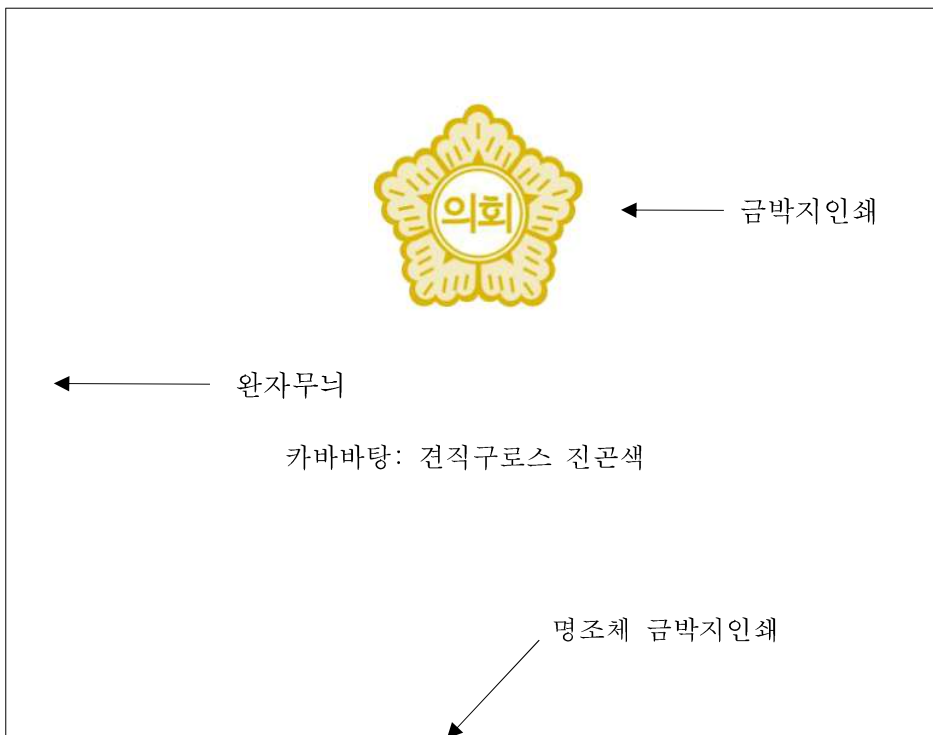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2호서식〉

금박인쇄
↓

제 호

← 금박지인쇄



표 창 장

소속(주소)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금박지부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 금박리본

(305mm×450mm)

〈별지 제3호서식〉

금박인쇄
↓

계 호

← 금박지인쇄

의회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표창문)

20 년 월 일

금박지부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 금박리본

(305mm×450mm)

〈별지 제4호 서식〉

금박인쇄
↓

제 호

← 금박지인쇄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금박지부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 금박리본

(305mm×450mm)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요 학력 및 경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u>의회 의장</u> 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4. (생략)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 (생략)	제6조(상장 수여대상)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2.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 3. (생략)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u>별지 제1호 내지 제4호</u> 의 서식에 의한다. ② (생략)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 ----- <u>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u>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의

금박지인쇄

완자무늬

카바바탕: 견직구로스 진곤색

명조체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1호서식〉

의

금박지인쇄

완자무늬

카바바탕: 견직구로스 진곤색

명조체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2호서식〉

의

금박지인쇄

완자무늬

카바바탕: 견직구로스 진곤색

명조체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2호서식〉

의

금박지인쇄

완자무늬

카바바탕: 견직구로스 진곤색

명조체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3호서식〉

금박인쇄

금박지인쇄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상 장 문)

20 년 월 일

은박지부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적색리본

(305mm×450mm)

〈별지 제3호서식〉

금박인쇄

금박지인쇄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표 장 문)

20 년 월 일

은박지부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금박리본

(305mm×450mm)

〈별지 제4호서식〉

금박인쇄

금박지인쇄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은박지부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적색리본

(305mm×450mm)

〈별지 제4호 서식〉

금박인쇄

금박지인쇄

제 호

감 사 장

소속(주소)
직 성명

(표 장 문)

20 년 월 일

은박지부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금박리본

(305mm×450mm)

〈별지 제5호 서식〉

주요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학 력	연 월 일	학 력

〈별지 제5호 서식〉

주요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